

# 공정불만 해결절차의 개요

부모측에서 임의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는 한 심리에 대한 비용이 부모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심리는 부모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심리는 매릴랜드 행정심리국이 지명한 행정법 판사에 의해 실시됩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부모들은 통역자를 배석시키거나, 필요할 경우 특별 의사소통수단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다음 자료는 조기 중재 시스템에서의 부모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메릴랜드 주석법(Annotated Code of Maryland) 제 8-416절
- COMAR 13A.13.01
- 장애인교육법 (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수정 제 C부 공법 105-17
- 미연방규정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 34장 제 303부
- 미연방규정 제 34장 제 560-577절 제 300부
- 미연방규정 제 34장 제 99부

### 이 문서들의 사본 입수 문의처:

메릴랜드 주 교육청  
특수교육/조기 중재 서비스 분과  
**메릴랜드 영유아 프로그램**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1  
음성 (410) 767-0261 • 무료 음성 (800) 535-0182  
팩스 (410) 333-8165 • 문자전화 (410) 333-0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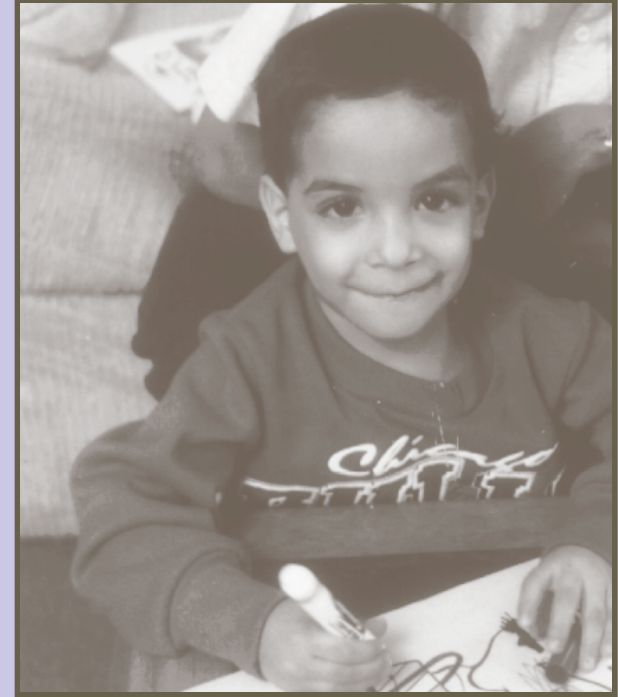
Robert L. Ehrlich, Jr.  
주지사

Edward L. Root  
메릴랜드주 교육위원회 회장

Nancy S. Grasmick  
주 교육감

Carol Ann Baglin  
주 부교육감  
특수교육/조기 중재 서비스 분과

메릴랜드주 교육청은 채용이나 프로그램에 참가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인종, 피부색, 성, 연령, 출신국가, 종교 또는 장애로 인해 차별하지 않습니다. 해당국의 정책과 관련된 문의는 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Branch, 전화 410-767-0246, 팩스 410-333-2226, 또는 문자전화 410-333-6442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문서는 특수교육/조기 중재 서비스 분과가 미국 교육부 산하의 특수교육 및 재활 서비스국의 자금 지원(장애인교육법 제 C부 허가번호 H181A020124)을 통해 개발, 제작한 것입니다. ♦ 여기에 명시된 견해가 반드시 미국 교육부 또는 기타 연방기관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그렇게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정보는 저작권법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독자들은 이 자료를 자유롭게 복사 및 공유할 수 있으나 제작자는 메릴랜드주 교육청, 특수교육/조기 중재 서비스 분과임을 표기하여 주십시오. ♦ 미국장애인법(ADA)에 의거하여 이 자료는 요청시 다른 형태로도 이용가능 합니다. 메릴랜드주 교육청 특수교육/조기 중재 서비스 분과는 음성 410-767-0261, 팩스 410-333-2661, 문자전화 410-333-0731로 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중재 시스템에서의 공정불만 해결절차

메릴랜드 주 교육청  
특수교육/조기 중재 서비스 분과  
메릴랜드 영유아 프로그램



**경**우에 따라, 조기 중재 시스템에의 가족 참여와 관련해 서비스 제공자와 부모가 다음과 같은 몇몇 사항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 자격 결정
- 아동의 평가 또는 판단
- 유자격 아동에 대한 조기중재서비스의 제공
- 조기 중재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재정적 의무

이러한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서로 동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부모의 불만 처리를 돕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중재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자발적인 형태의 불만해결 절차이며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 하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중재인이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영유아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조기중재 시스템에**서의 중재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공정불만 해결절차**는 공식적인 절차로써 부모가 제기하는 불만 처리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는 심리에서 쌍방과 각 증인이 제시하는 증거를 바탕으로 한 행정법판사의 판결이 요구됩니다.

공정불만 절차가 계류 중일 때에 지방프로그램 및 부모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기중재서비스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해당 불만사항이 초기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경우, 아동은 분쟁 상태에 있지 않는 다른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심리 기간 동안 부모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조기중재서비스에 대한 지식이나 교육 경험이 있는 변호사 및 개인을 동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 제시, 증인 상호 대질, 반대신문 및 증인 출석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심리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5일 전에는 공개되지 않은 증거의 제출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심리를 마친 후, 부모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메릴랜드 영유아 프로그램의 심리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판결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의사의 축적적 기록 사본(서면 또는 전자형태)을 무료로 입수할 수 있습니다.
- 판결에 불복할 경우, 주 또는 연방법정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모들의 심리요청 방법

메릴랜드 주 교육청, 특수교육/조기중재 서비스 분과, 메릴랜드 영유아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공정불만 해결절차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요청서에는 심리 전에 부모들에게 중재절차 이용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중재절차를 선택하지만 당사자들이 그 중재절차에서 상호 합의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모는 **공정불만 해결절차**를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